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학칙」 제62조에 의거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9. 1.)

## 제2장 입학전형

**제2조(지원학과)** ① 「대학원 학칙」 제7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 9. 1., 2008. 6. 25.)

② 연구생은 학과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 6. 25.)

**제3조(제출서류)** 각 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 9. 1., 2009. 10. 12., 2018. 9. 3.)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평균평점 또는 백분율 표기)

라. 면학계획서 1부

마. 기타 필요한 서류

2. 연구생: 석사학위과정과 동일함

3.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석사학위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평균평점 또는 백분율 표기)

라. 면학계획서 1부

마. 연구실적목록 1부

바.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전형료)** ①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 등이 입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입시수당은 전형료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6. 4.)

**제5조(석·박사학위통합과정)** ① 매 학기 해당계열 박사학위과정으로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2.)

② 지원학과는 석사학위과정과 동일학과에 한한다.

③ 지원자격은 해당 학년도 입학생에 한한다.

**제6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가 정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

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개정 2004. 9. 1.)

②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확한 방법으로 합격하였거나 지원자격 미달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3장 학점등록 및 수료자 등록

**제7조(학점등록)** ① 학점등록 대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9. 1., 2008. 3. 1., 2019. 3. 1.)

1.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3학점 이내인 경우
2. 「대학원 학칙」 제25조제3항에 의거하여 규정된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경우

② 학점 당 학점등록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1.)

1. 수업연한 4학기 과정: 재학생 등록금의 1/9
2. 수업연한 5학기 과정: 재학생 등록금의 1/6

③ 재입학생 중 학점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의한 학점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1.)

**제8조(수료자 등록 및 연구 등록)** ① 대학원별 학점당 수료자 등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3. 1., 2019. 6. 3.)

1. 일반대학원, 예술대학원, 융합공학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 재학생 수업료의 1/18
2.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MBA학과), 정책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스포츠산업대학원, 유아교육대학원: 재학생 수업료의 1/12
3. 경영대학원(GMBA학과): 재학생 수업료의 1/24

② 수료자 연구 등록 자격, 절차, 등록학기, 등록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신설 2004. 9. 1., 개정 2017. 9. 1., 2019. 6. 3.)

### 제4장 휴학 및 복학

**제9조(휴학 구비서류)** ① 휴학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가. 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 휴학신청서
  - 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 휴학신청서, 1개월 이상의 진단서
  - 다. 기타휴학: 휴학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2. 군입대 휴학: 휴학신청서, 법령에 의한 의무복무자로서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휴학신청서, 증빙서류
4. 창업에 의한 휴학: 휴학신청서,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휴학을 할 경우에는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휴학사유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휴학신청서 제출시기)** 휴학신청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3. 1.)

1. 미등록 휴학은 휴학 당해 학기의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등록 후 휴학은 정규등록 개시일로부터 휴학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3. 군입대 휴학신청서 제출기간은 입영일 2주전부터 입영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통산하여 네 학기(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여덟 학기, 특수대학원은 여섯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휴학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4. 9. 1., 2017. 9. 1.)

② 휴학기간이 종료된 자가 계속하여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연기신청서를 복학해야 할 학기 개시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9. 1.)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휴학기간은 1년(창업에 의한 휴학기간은 최대 2년) 또는 연수원 교육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2.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3.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4. 창업에 의한 휴학

**제12조(복학시기)** 복학은 해당 학기 지정한 복학기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등록금 인정)** ① 수업일수 1/3 이전에 휴학한 자에게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대체 인정한다.

②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휴학한 자에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5장 수업 및 학점

**제14조(수강신청 및 타 대학교 교과목 이수)**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매년 2월 중, 8월 중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 9. 1.)

②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학생의 경우에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외 다른 대학교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 절차, 등록방법, 학점인정 방법 등은 해당 대상 대학교와의 협정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04. 9. 1.)

③ 제2항에 의거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 4학기 과정은 두 학기, 수업연한 5학기 과정은 세 학기 이상을 우리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 9. 1., 개정 2008. 3. 1., 2017. 9. 1.)

④ 교내 타 학과 및 타 대학원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12학점 이내에서 소속 학과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 학생은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신설 2015. 11. 1., 개정 2018. 4. 17., 2019. 3. 1.)

⑤ 폐원된 특수대학원 또는 폐과된 학과(모집중지 학과 포함)의 소속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을 포함한 교내 다른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 학생은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신설 2018. 4. 17., 개정 2019. 3. 1.)

**제15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매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로 한다.

**제16조(수강포기)**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

의 1/2 이내에 담당교수,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그 과목의 수강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수강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2 이전에 수강포기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성적 정정)**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오기되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성적 정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18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한 후 군입대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정기고사)** 정기고사는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사일정의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출석부 관리)** 강의출석부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관리하고 출결상황은 매 시간 담당교수가 확인 및 표시하여야 하며, 학기 종료 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 교육과정 운영

**제21조(교육과정 편성)** 각 과정의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공통(기초), 전공, 교직과목 등은 성적표 등에 명기하지는 아니한다.(개정 2004. 9. 1.)

1. 공통(기초)과목    2. 전공과목    3. 교직과목(교육대학원)    4. 선택과목
5. 선수과목    6.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7. 학위청구논문
8. 학위청구논문 대체과목(해당 특수대학원)

**제22조(교육과정 설정의 원칙)** 모든 교육과정은 학문 추세에 맞는 각 과정의 학문수준과 해당 학과의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통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 9. 1.)

**제23조(교육과정 운영)** ① 강좌개설은 각 학과장이 학기 시작일 1개월 전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강좌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학과의 재학생 인원에 따른 개설 강좌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3. 1., 2014. 3. 1., 2016. 9. 1.)

재학생 수	개설가능 교과목	최대 개설가능 학점
10명 이하	4 과목 이하	12
11명 ~ 15명	5 과목 이하	15
16명 ~ 20명	6 과목 이하	18
21명 ~ 30명	7 과목 이하	21

\* 재학생 10명 초과 시 1과목 추가 개설

- ③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석·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과의 과정을 준용한다.
- ④ 학과별로 외국어 교과목 1강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영어능력시험(학과장 추천 포함)으로 입학한 외국인 재학생 수가 6명 이상인 학과에서는 외국어 교과목 1강좌를 추가로 더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8. 3. 1.)
- ⑤ 개설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1. 5.)
- ⑥ 교수 1인의 학기당 개설 교과목수는 1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유사교과목은 학과 또는 전공간 협의하여 중복개설을 지양하고 통합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⑧ 교과목별 석·박사학위과정의 구분 없이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 9. 1.)
- ⑨ 강좌개설의 재학생 수 기준은 해당학기 4월 1일, 10월 1일 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6. 9. 1.)
- ⑩ 통합된 학과는 2개 강좌 이내로 추가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 9. 1.)
- ⑪ 집중수업 운영학과는 2개 강좌 이내로 추가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18. 3. 1.)

**제24조(공동강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대학원장은 타 대학교 대학원과 공동강의 및 학점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교과목 담당교수 및 시간강사)**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하여 교과목을 담당케 한다.
- ③ 시간강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과장이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시간강사 추천서를 학기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전임교원(개정 2012. 9. 1.)
  2.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하고 대학, 대학원 등에서 1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다만 상기 자격을 갖춘 자 중 우리 대학교 졸업자는 강의경력 여부에 관계치 아니한다.
  3. 행정기관, 공공연구기관, 국영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중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제1호, 2호 및 3호의 자격에는 미달하더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장이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승인할 수 있다.
    - 가. 해당 교과목의 내용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초빙하기 어려울 때
    - 나. 실험, 실습, 실기과목을 담당할 시간강사로서 해당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5. 시간강사 추천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되는 시간강사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가. 이력서(대상자 전체)
    - 나. 재직증명서(제3항제1호 및 제3호 해당자)
    - 다.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 라. 경력증명서(제3항제2호 해당자)
  6. 시간강사 강사료는 우리 대학교 「강사료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26조(담당과목 제한)** 학과별로 동일교수가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 수는 학기당 1개 과목(교직과목은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개 과목을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 9. 1., 2011. 12. 1.)

**제27조(교과목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과목(담당교수, 시간, 장소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학과장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변경원을 당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 9. 1.)

## 제7장 전공변경

- 제28조(전공변경)** ① 동일학과 내에서 세부전공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첫 학기를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변경원을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 9. 1., 2013. 9. 1., 2017. 9. 1., 2019. 9. 1.)
- ② 전공변경을 한 경우 이수학점 인정은 변경 전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한다.(개정 2004. 9. 1.)

## 제8장 선수과목

**제29조(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 중 하위 과정과 비동일계 학과에 입학한 자는 수료학점 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대학원의 선수과목 이수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대학원 학칙」 제4조의2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의 선수과목 이수대상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 9. 1., 2008. 6. 25., 2009. 3. 1., 2009. 4. 29., 2009. 9. 7., 2009. 10. 12.)

**제30조(선수과목 이수학점)** ① 일반대학원 이수대상자는 입학 후 네 학기 이내에 소속 학과의 기초가 되는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 표시는 P(합격), F(불합격)로 한다.(개정 2004. 9. 1., 2008. 6. 25., 2017. 9. 1.)

② 일반대학원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유사전공자의 경우 3학점에서 6학점 이상을, 비동일전공자의 경우 9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대학원의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3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9. 7.)

③ (삭제 2009. 3. 1.)

④ 교육대학원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9. 1.)

**제31조(선수과목 신청)** ① 선수과목 신청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성적이 B학점 미만일 때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선수과목은 「대학원 학칙」 제25조에 정해진 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4. 9. 1.)

**제32조(선수과목 결정)** 선수과목의 결정은 해당 학과교수회의에서 하며 학과장은 이수해야 할 과목명을 매 학기 초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별 선수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학과는 학과 내규에 따른다.

## 제9장 자격시험

**제33조(시험위원)** 외국어시험 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졸업시험의 시험위원은 각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4조(시험 결과보고)** 자격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한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로 한다.(개정 2017. 9. 1.)

**제36조(외국어시험 시험시기)**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37조(외국어시험 시험과목)** 내국인은 영어로 하며 외국인은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전공 수학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외국어시험 시험수준)** 외국어 독해능력이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정도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제39조(외국어시험 시험시간)**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외국어시험 합격인정)** ① 석사학위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박사학위과정(석·박 통합과정 포함)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성적표시는 P(합격), F(불합격)로 한다.

② (삭제 2009. 7. 1.)

③ (삭제 2009. 7. 1.)

**제41조(졸업시험 응시자격)** 네 학기 이상(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세 학기 이상)을 정규등록하고 해당 과정에서 24학점(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8학점)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로 한다. 다만 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한다.(개정 2012. 9. 1., 2015. 11. 1., 2016. 9. 1., 2017. 9. 1.)

**제42조(졸업시험 시험시기)** 매 학기 말에 실시한다.(개정 2016. 9. 1.)

**제43조(졸업시험 시험과목)**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으로 석사학위과정은 3개 과목(예술대학원은 2개 과목, 교육대학원은 전공 2개 과목, 교직 1개 과목(다만, 부전공자는 전공 3개 과목)) 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은 4개 과목으로 한다.(개정 2004. 9. 1., 2010. 9. 13., 2017. 9. 1.)

**제44조(졸업시험 시험수준)** ① 석사학위과정은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개정 2016. 9. 1.)

② 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은 학생이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공분야 및 관련분야의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개정 2016. 9. 1.)

**제45조(졸업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실시 방법)** ① 각 교과목마다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실시 방법은 학과장 책임 하에 해당교수가 실시한 후 결과를 당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졸업시험 합격인정)**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다만 성적표시는 합격(P)으로 한다.

**제47조(재응시 및 대체)** ①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신설 2009. 7. 1.)

② 입학시 영어성적 우수자 및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어학능력시험(TOEFL, TOEIC, TEPS, TOPIK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시험원서 제출 시 본인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9. 7. 1., 개정 2011. 12. 1.)

③ 외국어특강 또는 영어(외국인은 한국어강좌)를 수강한 후 소정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9. 7. 1., 개정 2011. 12. 1., 2016. 9. 1.)

④ 학위 청구논문 대체가 가능한 대학원 중 입학전형 시 영어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원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9. 7. 1.)

⑤ 학위 청구논문 대체가 가능한 대학원 중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36학점 이상인 대학원의 학과는 졸업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9. 7. 1., 개정 2016. 9. 1.)

## 제10장 학위 청구논문

**제48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및 절차)** ①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 제출 자격은 「대학원 학칙」 제33조에 의거한다.

② 논문 제출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석사학위논문

- 가. 논문지도교수 선정
- 나.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다. 논문발표 및 심사
- 라. 논문지도보고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마. 논문 제출

2. 박사학위논문

- 가. 논문지도교수 선정
- 나.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다. 논문연구계획서 발표(기초연구 발표)
- 라. 논문발표 및 심사
- 마. 논문지도보고서 및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바. 논문 제출

3.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연주중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9. 1.)

4. 일반대학원 미술계 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작품중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9. 1.)

5. 예술대학원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 실기발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9. 1., 2010. 9. 13.)

③ 석사학위논문 대체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 학생은 별도의 학위논문 대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7. 9. 1.)

④ 석사학위논문 대체를 희망하는 특수대학원 학생은 당해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면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대체받을 수 있다.(신설 2004. 9. 1., 2011. 3. 1., 개정 2011. 9. 1., 2014. 3. 1., 2017. 9. 1.)

⑤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를 희망하는 학생은 둘째 학기 이후에 학위논문 대체희망원을 제출하고 최종학기에 학위청구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 9. 1., 2011. 3. 1., 2014. 3. 1., 2014. 9. 1., 2014. 3. 1., 2017. 9. 1.)

⑤ (삭제 2017. 9. 1.)

⑥ (삭제 2011. 9. 1.)

**제49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대학원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 학사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학사지도교수의 자격은 전임교원에 한한다.(조 개정 2018. 9. 1.)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후 둘째 학기 이후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제50조에 의거하여 논문지도교수 자격을 인정받은 전임교원 중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1.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과에서는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생이 연구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전임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과에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 대학원장은 명예(석좌)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50조(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예능계 학과는 석사학위 이상)으로서 논문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급 국제저명학술지에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3편 이상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 대학원위원회로부터 논문지도교수로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4. 9. 1., 2010. 9. 13.)

②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예능계 학과는 석사학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9. 13.)

③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논문게재와 동등한 업적으로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 9. 13.)

④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할 때까지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세 학기 이상을,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다섯 학기 이상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0. 9. 13., 2017. 9. 1.)

**제50조의2(논문지도교수 임무)** 논문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이 학위논문의 연구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적, 형식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과 학사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1.)

**제51조(논문지도교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지도교수의 연구년, 휴직, 파견,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학생은 현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 개정 2018. 9. 3.)

② 논문지도교수변경원 제출 시 불가피한 사유로 현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대학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52조(공동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가 연구년, 장기해외출장, 파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지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및 일정기간 동안 타 전공분야의 연구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04. 9. 1.)

② 우리 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연구소 연구원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서 우리 대학교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에는 타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 자격은 제50조에 따른다.

④ 논문에는 공동지도교수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에서 공동지도교수 자격은 박사학위과정은 박사학위를, 석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제53조(논문지도교수의 지도 학생수)** 논문지도 학생수는 학기별, 학위과정별 3명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논문지도 기간)** ① 논문지도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은 한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두 학기 이상으로 한다. 논문지도 기간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기와 본심사 완료 학기를 포함한다.(개정 2007. 3. 1., 2017. 9. 1.)

②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논문지도 기간을 합산하여 제1항의 기간 이상을

지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3. 1.)

**제55조(논문지도보고서)**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 완료시 대학원장에게 논문지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논문지도비)**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비는 대학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7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및 내용)** ①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자격 및 시기는 「대학원 학칙」 제32조에 의거한다.

② 논문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9. 1)

1. 논문제목
2. 연구목적: 필요성, 문제의 제기, 연구과제 등
3. 이론적 배경 및 근거
4. 가설(가설이 필요한 논문 또는 해당학과)
5. 연구방법
6. 기대되는 결과
7. 참고문헌 등
8. 연구진행 일정 등

③ 논문연구계획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이 그 내용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 9. 1.)

**제58조(논문연구계획서 발표)**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위원(논문연구계획서 심사위원을 논문심사위원과 동일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참석 하에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위원장은 발표내용을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3.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논문제목 변경)**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논문지도 진행 중 논문제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판단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학과장은 논문발표 신청 시 논문심사위원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개정 2018. 9. 3.)

② 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논문심사위원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도교수에게 변경 요청을 하되 지도교수가 변경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추천서 제출 시 논문심사위원변경요청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③ 학과장이 논문심사위원변경요청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심사위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61조(논문심사위원의 수 및 자격)**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우리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우리 대학교 내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 1명은 타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또는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 1명, 기타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기타위원 4명은 우리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 3명과 타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또는 연구소 연구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위원은 우리 대

학교 전공영역 교원만으로 구성 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교원, 박사학위(예능계 학과는 석사학위 이상)를 소지한 타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9. 1.)

**제62조(논문심사위원장 선정 및 임무)**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1명을 추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 9. 1.)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논문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논문심사 의결권은 기타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하다.

**제63조(논문심사위원 임무)**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논문발표 요지, 논문내용, 참고문헌 및 논문체제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지, 이미 발표된 부분이 논문에 삽입되어 있거나 부분논문으로서 구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64조(논문심사위원 변경)** 논문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변경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9. 1.)

**제65조(논문발표 신청)**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논문발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논문발표 시기 및 장소)** ① 논문발표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로 하며, 구체적인 발표일정은 매 학기 대학원 학사일정 범위 안에서 논문심사위원장, 학과장, 논문지도교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 논문발표 및 심사는 교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장소와 일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7조(논문발표 공지 및 발표)** ① 해당 학과장은 논문발표를 학과교수 및 관계 전공분야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논문발표는 논문심사위원, 학과교수 및 관계 전공분야 연구자들 참석 하에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③ 논문발표자는 발표요지(A4용지, 20매 내외)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 9. 1.)

**제68조(논문심사 순서)** 논문심사 순서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예비심사, 본심사(구술심사 포함), 양식 및 체계심사 순으로,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예비심사(1차 및 2차), 본심사(구술심사 포함), 양식 및 체계심사 순으로 실시한다.(개정 2018. 11. 5.)

**제69조(예비심사)** ① 논문발표자는 예비심사 1주일 전에 심사용 논문(석사는 3부, 박사는 5부)을 논문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본심사 포함) 진행 중에 발표요약서, 관련문헌,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논문발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발표자는 심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예비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위원장은 각 논문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을 통합한다.

④ 예비심사 시기는 매년 5월 중순과 11월 중순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 학사일정 범위 내에서 논문심사위원장, 학과장, 논문지도교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⑤ 각 과정별 예비심사 내용은 다음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논문내용의 학술적 가치
- 나. 논리적인 전개와 타당성
- 다. 내용의 창의성 여부
- 라. 이미 발표된 논문의 부분 삽입여부
- 마. 수정 보완하여야 할 내용

2. 박사학위과정: 1차 예비심사의 내용은 석사학위과정 예비심사 내용에 준하며, 2차 예비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차 예비심사 지적사항 수정보완 이행여부
- 나. 논지의 명확성
- 다. 논문체제의 적합성
- 라. 참고문헌 활용
- 마. 모든 인용문 확인

**제70조(본심사)** ① 논문발표자는 본심사 1주일 전에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심사용 논문(석사는 3부, 박사는 5부,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각각 첨부)을 논문심사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심사(구술심사 포함)가 끝나면 논문심사위원장은 각 논문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의견서를 통합하여 본심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본심사 시기는 매년 6월 초순과 12월 초순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 학사 일정 범위 내에서 논문심사위원장, 학과장, 논문지도교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④ 본심사의 내용은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논리적인 전개와 타당성 및 수정 보완사항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71조(구술심사)** ① 본심사는 반드시 구술심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사는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③ 구술심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논문심사 및 구술심사 평가)** ① 논문심사는 A+, A, B, C 4등급으로 평가하며, 논문의 합격은 석사학위과정은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에 B(80점 이상) 이상의 평가로 결정한다.

- 1. A+(95점 이상) - 최우수논문
- 2. A (90점 이상) - 우수논문
- 3. B (80점 이상) - 보통논문
- 4. C (79점 이하) - 불합격

② 구술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하며, 석사학위과정은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이 합격 평가로 결정한다.

**제72조의2(양식 및 체계심사)** ① 본심사 및 구술심사에 합격한 논문발표자는 인쇄된 심사용 논문과 심사요청서류를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8. 6. 4.)

② 논문지도교수는 제출된 논문을 제77조에 의거하여 논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양식 및 체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논문심사 결과보고 및 완성논문 제출)** ① 양식 및 체계심사가 완료되면 논문심사위원장은 최종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4.)

② 논문발표자는 논문심사에 합격하면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된 논문 1권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3., 2018. 6. 4., 2018. 9. 3.)

③ 대학원장은 제출 받은 논문을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논문의 체제와 형식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 2017. 9. 1.)

**제74조(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작성, 제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논문 표기언어)** 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하되 한문을 혼용하여도 된다. 다만 학문 성격상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논문 작성법)** 대학원 학과별 지정 논문 작성법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7. 3. 1.)

**제77조(논문 양식 및 체계)** 논문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7. 3. 1.)

**제78조(논문의 제출)** 학위수여가 결정되면 소정의 기일 내에 완성된 논문 5권(심사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된 논문 3권 포함)을 대학원에 제출하고, 논문 파일은 지정된 웹사이트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9. 1., 2008. 3. 1., 2018. 6. 4.)

**제79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 11 장 연 구 생

**제80조(연구생)** 석사학위과정에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들 수 있으며 이 과정의 학생을 연구생이라 한다.

**제81조(입학자격 등)** 입학자격 및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82조(수학연한)**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며 한 학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9. 1.)

**제83조(수료학점)** 수료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제84조(수료증명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5조(학점인정)** 수료생이 우리 대학원 관련학과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수료학점 중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4년 3월 1일자로 폐원된 산업기술대학원은 기존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4. 이 개정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이전의 태권도교육프로그램학과에 입학한 재학생(휴학생 포함)

2-0-4-14 학칙

및 수료생들은 개정 시행세칙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이 개정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세칙은 200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 세칙에도 불구하고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7. 이 개정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세칙은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세칙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세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장 자격시험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0년 3월 1일자로 폐원된 여성학대학원, 통·번역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의 재학생 및 수료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12. 이 개정세칙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1년 9월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14. 이 개정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전에 지능형자동차대학원으로 입학한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수료생에 대한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 및 절차(학위청구논문 대체 포함)는 종전 학칙시행세칙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8. 이 개정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세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은 2016학년도 후기 이전 수료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22. 이 개정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세칙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세칙은 201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세칙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세칙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